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09일

신길제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여**	여** 1979-11-2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4-05-09